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)
연 월 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특수관계자가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,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자가 요청내용을 명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특수관계자 참여 관리 규정 신설 (안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협약의 세부조건(예시) 제24조)

국가연구개발과제에 특수관계자 참여 시 관련 사실을 전문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해 상충 등 부정 발생 우려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특수관계자 참여에 대해 검토·승인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체계 강화

나. 재검토요청서 서식 정비 (안 별지 제10호서식 재검토요청서)

재검토심의를 요청하는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종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, 요청자 각각의 이름과 처분 내용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심의대상 명확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며, 같은 서식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특수관계자의 연구개발 참여 검토 등) 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등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자(이하 “특수관계자”라 한다)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경우, 사전에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차별로 해당 특수관계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의 필요성(활용 필수성, 대체 불가능성 등), 연구수행 능력(연구실적, 연구참여경력 등) 및 저자 자격의 적합 여부(전공, 학위 등) 등을 검토하고 승인한 다음, 그 증빙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③ 제2항에 따라 승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장의 검토사항과 증빙자료의 적합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 이후 승인하여야 한다.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의 공정한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·검토·승인 조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관리

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재검토요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
※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 ※ 반드시 하단의 '작성 요령' 을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		
요청인 ※ 대표 요청인(개인 또는 기관) 작성 작성 요령 참고	성명 또는 기관명		
	주소(직장 또는 자택)		
	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		
	휴대전화 / 직장전화		
	전자우편		
[] 대표자 [] 대리인 ※ 해당 시 작성 작성 요령 참고	성명		
	주소(직장 또는 자택)		
	소속		
	휴대전화 / 직장전화		
	전자우편		
소관 중앙행정기관명			
사전통지 문서명			
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		0000. 00. 00.	
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내용	요청인	사전통지 제재처분 및 환수 내용	
		참여제한(년, 개월)	제재부가금(원)
		환수금(원)	
※ 재검토요청인이 기관, 대표, 연구책임자 등 다수일 경우 재검토요청인의 성명(기관명) 및 요청내용 모두 작성 ※ 재검토를 요청하려는 처분 내용을 제재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			
재검토 요청취지			
재검토 요청사유			
증거 서류			
재검토 희망 기관(택일)		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☐ 소관 중앙행정기관	
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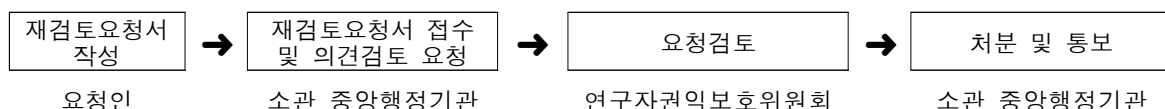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요청인 (인 또는 직인)

※ 재검토요청인(기관, 대표, 연구책임자 등)이 다수일 경우 재검토요청인의 서명 또는 직인 모두 날인 필요

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

증거서류	1.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(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) 2.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및 증거물
------	---

처리 절차



210mm×297mm[(백상지(80g/m²) 또는 종질지(80g/m²)]

작성 요령(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)

1. 요청인

- 1) 성명 또는 기관명: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.
※ 대표 요청인(또는 기관)의 정보를 작성합니다. 전체 재검토요청인 명단은 「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내용」에 작성합니다.
- 2) 주소: 제출인의 거주지(주택, 직장 모두 가능)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.
- 3)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: 요청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·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4) 휴대전화 / 직장전화: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또는 직장전화 번호를 기재합니다.
- 5) 전자우편: 사용 중인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.
※ 해당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관련 연락이 송부되므로, 반드시 확인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대표자, 대리인

- 1) 대표자: 요청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.
- 2) 대리인: 요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.

3. 소관 중앙행정기관명: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
4. 사전통지 문서명: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.

5.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: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.

6.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내용: 재검토요청인이 기관,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 다수일 경우 표 안에 행을 추가하여 재검토 요청인 별 제재처분 및 환수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
예) 재검토요청인이 기관,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 다수인 경우

요청인	사전통지 제재처분 및 환수 내용		
	참여제한(년, 개월)	제재부가금(원)	환수금(원)
연구개발기관 000	0년	0,000,000	0,000,000
대표자 000	0년	0,000,000	0,000,000
연구책임자 000	0년	0,000,000	0,000,000

7. 재검토 요청취지: 예) 00부에서 0000년 00월 00일에 사전통지한 참여제한 0년과 제재부가금 000원의 면제(또는 감경)를 요청합니다.

8. 재검토 요청사유: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.

9. 증거 서류: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,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.

7. 재검토 희망 기관: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요청인이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.